

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이용정원 및 모집방법)

1. 이용정원은 28 인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3. 이용자격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대상자(주간보호, 방문요양)

제2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(이용계약서 참조)

1. 계약기간 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2. 계약목적 -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, 기관은 이용을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등을 자세하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1. 매월 이용료는 다음달 10일~말일안에 납부하기로 한다. 당월 퇴소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지급한다.
2.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하며 비용부담액은 이용한 일수 만큼만 지불한다.

제4조(계약자, 당사자의 권리·의무) 서비스제공자 “갑” 과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“을”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이용자의 권리
 -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 -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 -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 -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 - 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 -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 - ⑦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 - ⑧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 -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 -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 - ⑪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2. 이용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지급의무 (일반, 의료보호 및 일반경감 대상에 한함)
-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센터 내에서의 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신원인수인 주소변경 시 통보 의무
- ⑤ 귀중한 물품의 소지시 안내 및 위탁의 의무
- ⑥ 이용료중 비급여발생시 본인부담의 의무
- ⑦ 기타센터 생활규칙 이행 의무

3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“갑”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고 “을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② “을”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(단, 병원입원 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- ③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)
- ④ 식사제공 의무
- ⑤ “을”의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
- ⑥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
- ⑦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⑧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및 발생시 신고의무(노인학대센터 ☎ 1577-1389)
- ⑨ 응급사고 시 긴급조치의 의무
- ⑩ 기타 “을”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- ⑪ “갑”은 타 이용자들의 편안한 요양생활을 도모하고, “을”의 일상생활 유지와 음식 제공 등 안전을 위한 결박 및 기타 안전조치 시 신원인수인의 승낙(각서 및 동의서)을 받고 시행할 의무
- ⑫ “을”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 의무
- ⑬ “갑”은 “을”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“을”의 개인 및 의료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“갑”은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본 계약에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” 서면으로 한다.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5조(계약의 해제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,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2. 이 계약은 “이용자”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.
- 3.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.
 - ①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② “서비스제공자”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“이용자”에게 통지 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명되거나 “이용자”가 치매나 정신병, 성격 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이용자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④ “이용자”가 센터 내에서 생활수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
 -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⑥ 어르신들의 보호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(위급 또는 응급상황에 연락 조치를 취하였으나, 방치 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시 3회 고지 후 계약 해지)
 - ⑦ “이용자”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-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제6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부분을 요청할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4.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시 담당자와 논의 후 계약서에 명시한다.

제7조(특별한 보호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 -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센터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- 대체할만한 요양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
 -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 -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
제8조(의료서비스 처리절차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 - ①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 - ②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간호(조무)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 - ④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2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 -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 -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 - 나.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.
 - 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

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가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가.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..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4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.

제9조(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

1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-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
-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

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① 기관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
-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⑤ 이용자가 보호자와 동행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3. 이용자들 간의 이동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및 사망시에는 보호자들간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배상책임을 조정하며 센터에서는 영업배상보험을 통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설물, 집기사용 주의사항)

1. “을” 은 시설물, 공용시설 또는 집기에 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할 경우 배상하여야한다.
2. 시설물, 공용시설 또는 집기를 파손하였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“을” 또는 신원인수인(보호자)이 “갑” 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.